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95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 송옥주·양정숙·김영주

송재호ㆍ아수진비ㆍ윤미향

박성준 · 김민철 · 박상혁

노웅래・김종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한 조종으로 항행할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또는 무인항공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오락 또는 레저 등을 위해 보급·활용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 성장가치가 높은 분야에 해당함.

그런데 드론산업의 활용과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 촉진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 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 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 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생 략)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
	<u>방・방재・방역・보건・측량・</u>
	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
	원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